

치과전문의제도의 나아갈 방향 모색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손국호 · 강현호 · 이화연*

I. 서 론

치의학계의 이슈들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문제이다. 치과전문의에 관해서는 1951년 국민의료법과 1981년의 의료법에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서 규정¹⁾ 이후로 계속된 도입시도가 있어 왔으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서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던 중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불실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²⁾ 19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과 법령의 위입에 따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등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³⁾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준비와 부합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50차 치과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안(이하 '가안'이라 칭함)을 의결하였다.⁴⁾

1)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3) 기존의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4) 소수정예의 전문의 양성, 5) 치과전문의 과목은 전과목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함, 6) 시행시기는 가칭 '치과전문의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신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7) 공적치과의사협회

에 소속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가칭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전문치과지도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등이 그 주요내용들이다. 가안의 내용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것이며 입법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장차 입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치의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헌법정책적인 차원의 연구로서, 동 연구는 문헌과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학적인 문헌과 자료들과 나아가 독일의 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독일의 문헌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독일법을 그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참고로 하였다. 법학적인 고찰에 있어서는 선행의 결정문이나 판례들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동종·유사의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선행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법규범적 의미와 치과전문의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Ⅲ.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법규범적 의미

1. 헌법적 의미

우리 헌법은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할 때 그 법치의 정점에서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찾는 것은 쉽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 조문을 통해서 헌법의 정신을 찾고 이를 치과전문의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이 있는 헌법 조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문언과 헌법 제10조 제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조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그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이다. 우리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이유를 비경쟁체제였던 공산주의체제와 대비해서 고찰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인류 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듯이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서 자유와 창의를 기초한 능력존중사회가 인류복지를 촉진시킨다는 전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바탕 하에서 세계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전 분야에서 무한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인류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전문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자유와 창의를 기초한 경쟁의 선순환 논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치

의학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둔 경쟁을 통한 치의학 분야의 발달을 추구하는 전문가적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치과전문의 제도의 실시가 여론이나 이익단체의 반대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됨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여론이나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초월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법적인 측면, 특히 헌법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치과전문의 제도의 실시에 관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경우에도 치과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또한 이 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실시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치과전문의라는 직업을 치과의사와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과목의 표방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최대한의 보호를 받는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를 일반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치의학 분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의료분야와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IV. 치과전문의제도의 나아갈 방향 모색

상기의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제50차 치과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치과전문의제도의 중심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안의 중심내용으로서는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존의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의 전문의 양성, 치과전문의 과목은 전과목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함, 시행시기는 가칭 '치과전문의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신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공직치과의사협회에 소속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가칭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전문치과지도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1.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며 목적으로서 기능을 한다. 행복추구권 역시 모든 기본적 인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⁵⁾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 알권리, 일반적 인격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하나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⁸⁾, 동 기본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한다.⁹⁾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 헌법은 개개인의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는 치과의사가 전문가로서 계속하여 발전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는 치과의사 개개인들에게 이러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의사협회의 가안을 살펴보면,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¹⁰⁾, 기존의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치과전문의 소수정예화,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시기의 장기간 연장, 공직치과의사협회에 소속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의 퇴임 시 전문치과지도의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가안은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포함하는 행복추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타당하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바, 공공복리란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¹¹⁾

가안의 내용들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치과의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특정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오히려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복추구권의 입장에서 볼 때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방향이 타당하려는 것은 치과전문의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일반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짐작되는 바, 이는 반드시 전문과목 표방금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가안의 방향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¹²⁾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소질을 함양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고찰할 때 개개의 치과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조장하는 방향으로 치과전문의제도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평등권

1) 헌법상의 평등권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현재 평등은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¹³⁾ 상대적 평등의 기준으로는 정의, 사회의 통념, 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의의 금지를 그 기준으로 들면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의 금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⁴⁾ 또한 그 성질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없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¹⁵⁾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가안의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개원을 하는 경우에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취급하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하여야 할 것인 바, 치과전문의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일반 치과의사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데서 치과전문의들 일반 치과의사와 구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일반

치과의사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과정을 거치지 없이 개업을 하거나 고용의사¹⁶⁾로 근무를 하는 자임에 반하여 치과전공의는 종합병원 이상의 수련병원에서 4~5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통해서 치과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특정 전문영역에 대하여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다. 일반 치과의사들은 일찍 개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치과전공의들은 이런 기회를 포기하고 수련을 받았는 바, 이러한 두 그룹은 교육·수련의 과정에 있어서 명백하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전문의에게는 1차 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하여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2) 한의사전문의제도와와의 비교 고찰

치과 전문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2001. 3. 15.자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심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¹⁷⁾ 왜냐하면 상기의 위헌확인심판에 있어서 한의사인 청구인들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사실상의 수련과정을 마쳤거나 수련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이 수련과정을 밟으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하였음에도 한의사의 경우 이 사건 규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미 사실상의 수련과정을 마쳤거나 수련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나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한의사들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취급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 있어서 평등에 있어서 근본문제는 입법자가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상기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정한 일부 경력자에 대하여만 수련과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청구인들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추측된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면, 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의미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의사 전문의제도와 치과전문 의제도를 비교 고찰함에 있어서 이들을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두 제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첫째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두 제도를 고찰할 때 그 연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실시하고 있다. 치과 전문의제도와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연혁을 고찰해 보면, 치과전문의 제도의 시작은 1951년의 의료업자전문과목 표방허가제의 제도화로부터 비롯된다. 그 후 보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업자 전문과목표 방허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1952. 7. 3.의 보건부예규 제2458호에 의해 수련병원과 수련기간의 인정기준이 공포되었다. 1972. 2. 17. 의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5075호로 “전문의 수련 규정”이 공포되었으며, 그 후 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전문의 수련규정을 폐지하면서, 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하여 수련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전문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1994. 1. 7. 법률 제4732호에 의한 개정으로 의료법 제55조에 도입되었으며, 보건복

지부는 전공의수련규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들로서 수련을 이수중인 자와 군전공의수련기관지정기준 이상의 한방병원에서 이와 동등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및 군전공의요원들로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만 수련기간을 인정하는 쪽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포되었다. 이상의 전문의제도의 연혁을 고찰할 때,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 전문의제도에 비해서 역사가 일천하여 두 제도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치과 전문의제도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근거를 전공의 수련과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직접적으로 치과전문 의제도에 대한 비교는 아니지만,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치과 전문의제도와 동일한 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보여진다. 군전공의요원 확보를 위한 전공의수련규정이 1997. 3.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의 한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이 각 한방병원에서 임의로 시행되어 주무관청에 의한 지휘·감독이 없었고, 선발인원도 임의로 책정되었으며, 전문분과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치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정도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셋째, 치과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1982. 7. 23. 전문과목 등을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치과 전문의 실시관련 규정만 제정하였을 뿐이므로,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는 정도이므로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치과 전문의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문의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전문의제도 도입을 전제로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언제부터 전문의제도를 도입할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하여 전문의자격을 인정할지, 전체 의사 중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할지, 어떠한 전문과목을 인정할지 등의 문제는 모두 입법자가 광범위한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치과전문 의제도와 한의사전문 의제도는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판사에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역사와 도입경위, 의학적 기초와 내용상의 차이, 전문의제도 도입의 시점 및 시대적 배경과 전문의료인에 대한 수요·공급의 여건, 의료기술의 구체적 행태와 의료시설 등에 있어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종전의 수련 과정을 거친 기존 한의사에 대하여 의사나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시와 같은 정도의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이 곧바로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치과전문의제도와 한의사전문제도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3) 국민의 알권리

우리 헌법은 제10조와 제21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⁸⁾ 알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¹⁹⁾ 알권리는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적 요소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수령, 취득 및 선택권을 포함하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된다. 국민이 치의학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이 갖는 보건권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치의학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할 때, 가안의 1차 치과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공직치과 의사협회에 소속된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의 퇴임 시 전문치과지도의라는 명칭을 사용금지 등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의 관계가 문제로 대두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치과진료기관의 전문과목표방을 허용하여 국민들이 치과 의사의 자격이나 능력 나아가서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치과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누구보다도 잘 치료해 줄 치과 의사를 찾으려면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신있는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이요,

자유경쟁체제의 근본이 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4) 직업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²¹⁾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활동, 즉 총체적이며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진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²⁾ 직업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의 자유 내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포함한다.²³⁾ 이러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²⁴⁾ 직업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직업행사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²⁵⁾

이러한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안의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존 치과 의사의 기득권 포기, 치과전문의의 소수화, 시행시기의 장기연장, 공직치과 의사의 퇴임시 전문치과지도의 명칭 사용금지 등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치과전문의를 치과 의사와 구별되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직업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적 요소를 들면 생활수단성·계속성·공공무해성을 들 수 있다.²⁶⁾ 이런 개념에 의하면 치과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치과전문의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치과전문의 역시 하나의 직업에 속하고 그렇다면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직업행사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커다란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치과의사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치과전문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 시행시기를 10여 년 뒤로 연기하는 것 역시 현재의 치과의사나 치과대학 학생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단계이론이 발전되었다. 이에 의거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선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며, 마지막 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²⁷⁾ 이러한 단계이론에 의거할 때, 치과전문의를 소수로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의사·한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경우에 실시되고 있는 면허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법적으로 볼 때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직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개성신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에 보다 엄격하게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한을 함에 있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행사에 대한 제한보다 더욱 고도의 정당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치과전문의의 주관적인 자격에 근거한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와는 무관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그 폭이 더욱 좁다. 가안에서 치과전문의를 소수로 하려

는 방향은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의 소지가 높다. 또한 현재의 일반치과의사들에게 치과전문의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 어떤 사유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사료된다.

5) 재산권의 보장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개성신장을 돕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²⁸⁾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²⁹⁾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³⁰⁾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³¹⁾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진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가칭 전문치과지도의 퇴임 시 전문치과지도의 표방금지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전문과목을 표방할 권리나 전문치과지도의 표방 권리 등은 재산권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한 사회적 지속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헌법적인 관점보다는 넓은 제한이 용인된다고 볼 것이다.

6) 입법자의 재량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법이란 법규범의 정립작용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법규범의 정립작용만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국회가 담당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³²⁾

입법자가 입법을 할 경우에 입법재량을 지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원리나 이론상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엇보다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치과전문의 과목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 가안에 의거하면 전과목에서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치과전문의를 실시하는 과목의 선택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구강악안면과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교정과나 치주과도 포함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실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치과전문과목 10개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법재량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 미국은 8과목, 캐나다는 9과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4개의 표방과목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현행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과목의 범위를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입법재량은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특히 평등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1차 진료기관의 과목표방금지를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³⁵⁾,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된다면 이러한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요청된다고 보이는 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시대의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한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입법은 그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7) 기본권의 제한

우리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바 이는 비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기존의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문제이다.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치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³⁵⁾ 이러한 기득권의 포기가 공공복리에 적합한가의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기득권의 포기는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이바지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득권의 포기의 방법이 가장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기타의 필요한 자격시험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련을 받지 아니한 치과의사들에게는 수련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부여하여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³⁶⁾ 그렇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치과전문의가 되는 길을 봉쇄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됨을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내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우리 헌법상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기존의 치과의사들에게까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치과의사 전원이 치과전문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³⁷⁾ 근거 없는 우려일 뿐더러 이는 수련과정의 문제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치과의사들에게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된 후 전문의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으로서 각인에게 각자의 것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치과의사들에게 10여 년 후에 전문의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치과전문의제도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현대국가를 헌법이 지배하는 헌법국가 내지 법치국가라고 볼 때, 이

러한 법치국가의 틀 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치과 전문의 제도가 나아가갈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국민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치과전문제의도는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치과전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치과전문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쟁이 지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50차 치과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치과전문 의제도에 대한 가안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민의료법 제41조: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
의료법 제55조: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및 보건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피청구인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 인정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 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4. 치의신보, 2001. 4. 28. 제1087호, 3면 이하.
5.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345면 이하.
6. 헌재 1991. 6. 3. 89헌마204; 1992. 4. 14. 90헌마23.
7. 허영, 한국헌법론, 1998, 321면.
8.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9. 헌재 1991. 6. 3. 89헌마204; 1992. 4. 14. 90헌마23.
10.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는 1951. 9. 25.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제4조의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다.
11. 권녕성, 헌법학원론, 1999, 321면.
12.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23면: ‘모든 치과의사에게 자유로이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협회에서 추구할 일이다.
13. 허영, 한국헌법론, 1998, 327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368면.
헌재 1989. 5. 24. 89헌가37; 1989. 11. 20. 89헌가102.
14. BVerfGE 4, 144(155); 86, 81(87).
15. BVerfGE 55, 72(88); 60, 123(133 f.); 81, 228(236).
16. 일명 pay-doctor라고도 함.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3. 15. 2000헌마96·103(병합):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서 4년간의 한방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으면 한의사전문이 될 수 없어 자신들의 전공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8.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544면;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19. 허영, 한국헌법론, 1998, 516면.
20.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23면.
21. 참조, 헌재 1993. 5. 13. 92헌마80: BVerfGE 7, 377(397): 기본권의 관점에서 직업의 개념은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이란 특정한, 전통적인 직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된 비정형적인 활동도 포함시켜야 한다.
22.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37면.
23.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452면.
24. Richter/Schuppert, Casebook VerfR., 1991, S. 271;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46면: 헌법 제10조야말로 우리 기본권 질서의 이념적·정신적 출발점의 기초가 되므로,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또한 헌법 제10조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자주적 인간상과도 상호관계가 있다.
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이러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5.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40면.
26. 권녕성, 헌법학원론, 1999, 496면;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38면.
27.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41면 이하.
28.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46면 이하.
29. 헌재 1992. 6. 26. 90헌바26.
30. 김동희, 행정법 I, 1999, 85면: 반사적 이익이라 함은 어떤 법령이 전적으로 공익만을 보호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31. 허영, 한국헌법론, 1998, 449면.
32. 허영, 한국헌법론, 1998, 856면.
33.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4면.
3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7, 302면; 허영, 한국헌법론, 1998, 279면 이하.
35.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23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가안에 대하여, '내가 언제 전문치과의사제도에 대한 기득권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나를 포함한 한국의 치과 의사 어느 누가가 이미 차지한 전문의로서의 권리가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라는 주장이 있는바, 여기서의 기득권이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대권이란 의미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36.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23면: 상기의 가안에 대하여 '조교수급 이상의 대학교원에게는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다는데 20여년간 치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고 ... 또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회원에게 좀 더 자기 분야를 한정해 완숙한 기량을 펼치게끔 ...'라는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치과 의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들에게는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37. 치의신보, 2001. 5. 12. 제1089호, 23면: '완벽한 안 아니지만 최선의 결정'.

Reprint request to:

Hwa-Yeon Lee, Prof. Dr. med. dent.

Department of Dentistry,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hongbu St. Mary's Hospital Kyung Gi, 480-130

Tel. 82-31-820-3184, 3186 Fax. 82-31-847-2894

E-mail. johanna@cmc.cuk.ac.kr

ABSTRACT

**A STUDY FOR THE DIRECTION OF THE DENTAL
SPECIALIST SYSTEM IN KOREA**

Guk-Ho Shon, Hyun-Ho Kang, Hwa-Yeon Lee*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istry,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ntal special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onstitution. An attempt to introduce a dental specialty system has been repeated many times, but it was interrupted by the dispute of the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general practice dentists, trained dentist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July 16th 1998 that the lack of the examination to be a dental specialist was agains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authority concerned should prepare the legal procedure for the dental specialist examination in proper time.

Though the dental specialty system may be discussed in a variety of views, it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ll the people can develop their abilities at the maximum and have their dignity, preciousness and right to seek their happiness. With the view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dental specialty system should be more open widely to those who want to be a specialist. It should be also allowed to the dental specialists that they reveal their specialty and creativity.

However,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KDA) decided at the 50th annual meeting that the dental specialists should not reveal or announce their specialties at the first step of the dental care and all the present dentists give up to be specialist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proposals of the KDA seem to be agains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hardly fulfill the needs of the times.